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수행자들을 위한

#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길잡이

2024. 5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수행자들을 위한

#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길잡이 2024. 5



#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길잡이

C O N T E N T S

01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의 특징  
03p

02

연구윤리의  
주요 이슈  
07p

03

연구윤리 관련  
주요 법령  
09p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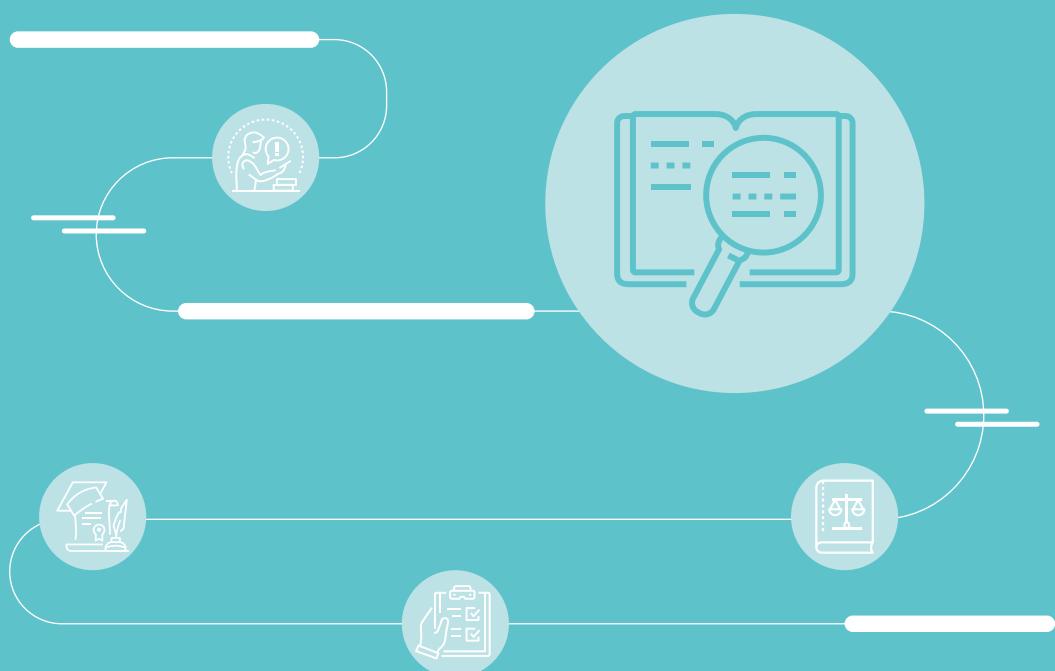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권고사항  
19p

부록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체크리스트  
29p

# 01

##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의 특징



# 01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의 특징

## 1 개요

- 인공지능(AI)의 발달 등 환경의 변화로 연구결과의 발표 뿐 아니라 연구수행 및 연구계획 단계까지 포함하는 전주기별 연구윤리 준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구윤리 이슈를 1) 연구계획서 제출, 2) 연구계획서 평가, 3) 연구결과물 제출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그림 1] 연구윤리체계도

## 2

##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의 특징

- 인문사회분야 연구는 이공분야 연구와 그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연구 및 연구윤리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인문사회분야 연구 및 연구윤리의 특징

- 인문학은 대상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여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차적이고 직접인 유용성을 산출하는 것이 아님.
- 사회과학(가령, 사회학)은 개별적인 모든 사회현상들의 이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칙적인 원리들을 탐구함으로써 전체적, 종합적, 통일적,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임.
- 인문사회과학은 학문의 특성이나 연구 방법상 표절과 충복개재의 문제가 주로 다뤄지고 있음.
- 공동연구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저자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음.
- 인문학의 특성상(문헌에 대한 비평적 고찰) 표절의 문제를 다룰 때 명확한 표절 판단의 기준을 세우거나, 일반적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어려움.
- 사회과학연구는 공동연구자 전체가 논문 전체의 연구 소주제에 전반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여도가 저자 자격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판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통계적 방법에 의존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통계 처리, 해석 과정에서 위조나 변조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출처: 이인재(2017),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동문사, 21-24

## 이공분야 연구 및 연구윤리의 특징

- 협업연구: 다수의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수행 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절해야 함(연구책임자의 역할, 논문 저자 표기 등).
- 실험실 연구: 실험실 공간적인 문제 또는 대인 관계에서 파생되는 스트레스 발생
- 실험과 결과 제시에서의 다양성: 연구자와 연구책임자는 다양한 실험과 측정방법을 숙지하고, 데이터 관리에 철저해야 함.
- 연구노트의 작성: 지속해서 발생하는 실험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데이터의 관리는 물론, 실험자의 연구 참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됨.
- 데이터 가공: 연구자들은 이를 원자료를 가공한 결과를 논문에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적이든(데이터 변조) 비의도적이든(실수와 과장)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
- 큰 규모의 연구비: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관리
- 연구결실에 대한 갈등: 논문 발표, 특허 또는 기술이전 등의 과정 조정
- 생命체 대상 연구: IRB 심의

※ 출처: 횡은성 외 6인(2014),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7-8

- 위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인문사회분야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인문사회분야 연구는 일반적인 차원의 연구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 부당저자표시·부실학술 활동 등)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며<sup>1)</sup>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질적·양적 연구 수행 시 생명윤리 관련 내용(IRB 심의)이 다뤄지고 있으며, 최근 인문학분야에서도 융복합 연구를 통해서 생명윤리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sup>2)</sup>
- 인문사회분야는 기존 연구의 전통(자신 혹은 타인의 연구 결과)을 이어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표절(특히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한 윤리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 부족, 무지, 무관심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학문적 특성과 전통을 무시한 획일적 잣대로 연구자의 연구 의지를 저해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연구단계별 인문사회·이공분야 연구 및 연구윤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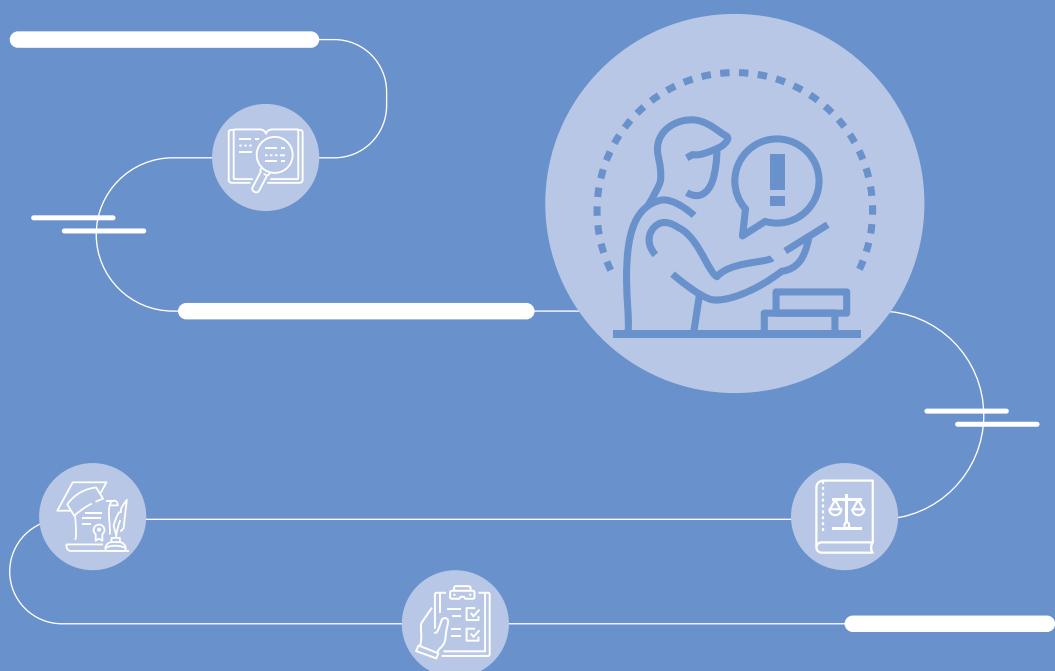
구분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이공분야 연구윤리
계획수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혹은 소수의 연구가 주를 이룸.</li> <li>● 인문연구의 경우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가 주로 수행됨.</li> <li>● 사회과학연구나 융합연구의 경우 공동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양적 연구나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필요함.</li> <li>● 기발표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li> <li>● 인용 관련 정확한 표기를 통해서 표절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함.</li> <li>● 대규모의 실험실에서 연구가 진행됨.</li> <li>●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 실험동물운영위원회(IACUC),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등 연구 분야가 다양함.</li> </ul>
연구수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과학 연구의 경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 (데이터 위치, 변조, 가공 등)</li> </ul>
과제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충돌 방지</li> <li>● 비밀누설금지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충돌 방지</li> <li>● 비밀누설금지 의무</li> </ul>
결과보고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성과로 논문발표·논문출간·저서 출간이 주로 이뤄짐.</li> <li>● 변조·위조·표절·중복게재·부당저자표시·부실학술 활동 등의 윤리규범이 중요하게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규모의 연구비가 집행되므로 연구비 관리가 중요함.</li> <li>● 특히 또는 기술 이전 등의 과정 조정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윤리규범에 더해서 이와 관련된 윤리규범이 요구됨. (일반적인 윤리규범 - 변조·위조·표절·중복게재·부당저자표시·부실학술활동 이외의 윤리규범)</li> <li>● 논문발표(출간) 대신 결과보고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li> </ul>

1) 류동춘 외 4인,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2014, 20-46

2) 최경석,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23.

# 02

## 연구윤리의 주요 이슈



## 02 연구윤리의 주요 이슈

-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안내서(한국연구재단, 2021)』에 수록된 질문들을 유형화하여 보면 연구윤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2> 연구윤리의 범주와 주요 내용

범주	주요 내용
표절	표절기준, 표절규정(2014) 개정 이전과 이후의 차이, 비슷한 연구주제 논문 게재,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경우 등
중복게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발표와 학위논문 게재,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 국내논문 해외 학술지 번역 게재, 연구계획서 중복제출, 사업보고서 학술지 게재, 논문 분할 게재 등
저작권 침해	강연록 자료집 만들 때 저작권 등의 여부, 간행물 게재 자료 사용, 온라인 강의 교안, 연락이 되지 않는 원저작자 등의 여부(법정 허락제도 활용 여부) 등
저자자격과 올바른 저자표기	논문 기여자 선정(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 관련 처벌 규정, 대학원생 논문을 지도 교수가 단독으로 게재한 경우, 부당한 저자표기 기준 등
사사표기	소속이 다른 연구원의 사사표기, 사사표기 수정 등
이해상충	이해상충의 의미와 목적, 교수 대신 박사과정 학생이 논문심사를 한 경우, 유사한 논문이 발표되는 경우, 출판윤리 위반 사례 등
연구부정행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부정행위 검증 과정, 연구진실성 검증 주체 및 행정절차, 제보자의 신원 보호, 검증결과 통보 절차, 조사위원 명단 공개 요구 가능성, 조사 진행 중 논문을 철회한 경우 등
부실학술활동	부실저널인지 모르고 논문을 게재한 경우, 부실학회참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약탈적저널 논문 투고 등
데이터 관리	동료가 데이터를 가져간 경우, 학생의 데이터를 위조해서 사용한 경우, 원본 데이터 공개 의무 관련 내용, 박사학위 논문에 석사학위 데이터 사용 여부 등
연구노트	연구노트 하위 기록 및 서명이 '위조'에 해당 되는지 여부, 연구노트 기록 의무화 관련 내용 등
IRB, IACUC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논문을 출간한 경우, IRB 승인된 하나의 주제로 다수의 논문 게재 여부, 국가기관 연구 IRB 승인 절차, IRB 면제 대상, 동물 연구 IACUC(동물실험 윤리위원회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절차 등

※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안내서, 한국연구재단(2021) <집필진 재구성>

# 03

## 연구윤리 관련 주요 법령



## 03 연구윤리 관련 주요 법령

### 1 연구윤리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대상

- 연구윤리에 관한 법령이 우리나라 법체계 내에 다소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슈를 다루는 부처가 다르고, 이슈가 제기된 시기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도표와 같이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3> 각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대상

법령	입법 취지(제정목적)	적용 대상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학술진흥법」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	학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연구자,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 중 일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해당 연구자와 연구기관 및 국민 일반

## 2

## 법령 별 연구윤리 관련 주요 내용

- 연구윤리 관련 이슈들이 법령으로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법령 별 연구윤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t;표 4&gt; 법령 별 연구윤리 관련 주요 내용

법률	연구단계 전반	연구계획서 작성	평가
국 가 연 구 개 발 혁 신 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②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증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서 제외(공모 이외 방법으로 선정한 경우 및 보안과제의 경우 가능) ⑤~⑦ 이의신청절차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연구자의 성실한 연구수행을 위해 동시 수행 연구과제 수 제한 가능 ② 연구수행과정 및 성과의 작성, 기록, 관리 의무(연구 분야의 특성에 따라)	제39조(별칙적용 공무원 의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형법 129조~132조(뇌물죄) 적용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포함]	
연구결과물 발표	제재처분	비고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 행위 2.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위반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제32조(제재처분) ① 제재처분 종류 1. 10년 이내 연구개발 참여제한 (또는) 2. 기지금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② 제재대상 행위 1. 수행과정 및 결과 불량 2. 의무 불이행(고의) 3. 과제 변경 또는 중단 4. 연구부정행위 5. 연구수행 포기 6. 기술료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 납부 거부 7.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 거부	

법률	연구단계 전반	연구계획서 작성	평가
학술진흥법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③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 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b>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b> 교육부장관 및 대학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 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 행위 금지 의무 ②③ 교육부장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 ④ 대학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		시행령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①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 구성·운영.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 포함하여 평가 전문성 유지 및 이해관계자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③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 종합평가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연구결과물 발표	제재처분	비고
	<b>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b> ①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표시  <b>시행령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b> 1. 중복게재로 연구비 수령 혹은 별도의 연구업적 인정 2.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고의적 방해 혹은 제보자 위해(危害) 3. 학문분야별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b>제19조(사업비의 지급중지 등)</b> ① 지급중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사업 수행 2. 연구 수행 포기 3. 연구부정행위 ② 환수 1. 용도 외 사업비 사용 2. 협약 위반 3. 결과보고 거부  <b>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b> ①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 학술지원 대상 선정 제외 ② 선정제외 시 소속기관장에게 15일 이내 통보	

구분	연구계획서 작성	평가	연구결과물 발표	제재처분
기타 법률	<b>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b> <b>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b> ①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시작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함.	<b>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b> <b>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b>저작권법</b> <b>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b>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가능	<b>저작권법</b> <b>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b>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  <b>제136~제138조(벌칙)</b>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제136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제136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제137조) - 5백만원 이하 벌금(제138조)
비고		· 연구재단(공직유관단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공기관으로 인정됨.  · 공직자의 경우 공무원 및 국공립대학교수가 해당 (사립대학교수는 공직자는 아니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평가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됨.)		윤리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부과(손해배상/벌칙)  *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함.

### 3 연구 단계별 주요 법규 체계와 내용

- 이상의 연구윤리 관련 법령들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

#####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명시적으로 연구계획서 작성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거짓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정의하여 금지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B. 「학술진흥법」

- 사업비 지급중지의 사유를 제시한 제19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열거하고 있어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음.

##### C.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과제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와 더불어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연구과제의 제안” 단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 이 지침은 연구과제 제안, 과제 수행, 과제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 연구계획서 작성의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의 금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정의하고 있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결과물 발표단계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 이 단계의 연구부정행위도 이후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의 검증 대상이 되고 조사위원회의 예비조사와 본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규정함. 조사 절차는 아래와 같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제13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 제14조(제보자의 권리보호) /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제16조(연구 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제19조(대학등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0조(예비조사) / 제21조(본조사) / 제22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 제23조(조사위원회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 제2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제25조(판정) / 제26조(의신청) / 제2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D.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직접적으로 연구계획서 작성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연구시작 이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연구계획서의 작성 단계에서 윤리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평가 단계

####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하거나 보안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서 제외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수행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상 뇌물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처벌을 받게 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B. 「학술진흥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규정 취지와 유사하게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의 단계에서 선정평가단의 구성은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만, 이를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개인에게 공정의무를 부담지우는 형식은 아니며, 학술진흥법의 주요 수범자인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의 공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선정 평가 단계의 윤리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C.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의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을 확보하고 있음. 각종 평가 및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를 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그 사정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D.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평가의 업무에 있어 피평가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분명한 의사표시로 거절하여야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 결과물 제출 및 발표 단계

####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의 자료 혹은 성과를 위조·변조하거나, 표절 혹은 부당하게 저자표시하는 것을 부정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
2. “변조”는 연구시설 · 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 · 추가 · 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 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B. 「학술진흥법」

-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금지되는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로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의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등을 제시하고 있음.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 변조 ·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C.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위조와 변조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동일하지만, 표절과 부당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D. 「저작권법」

- 표절과 관련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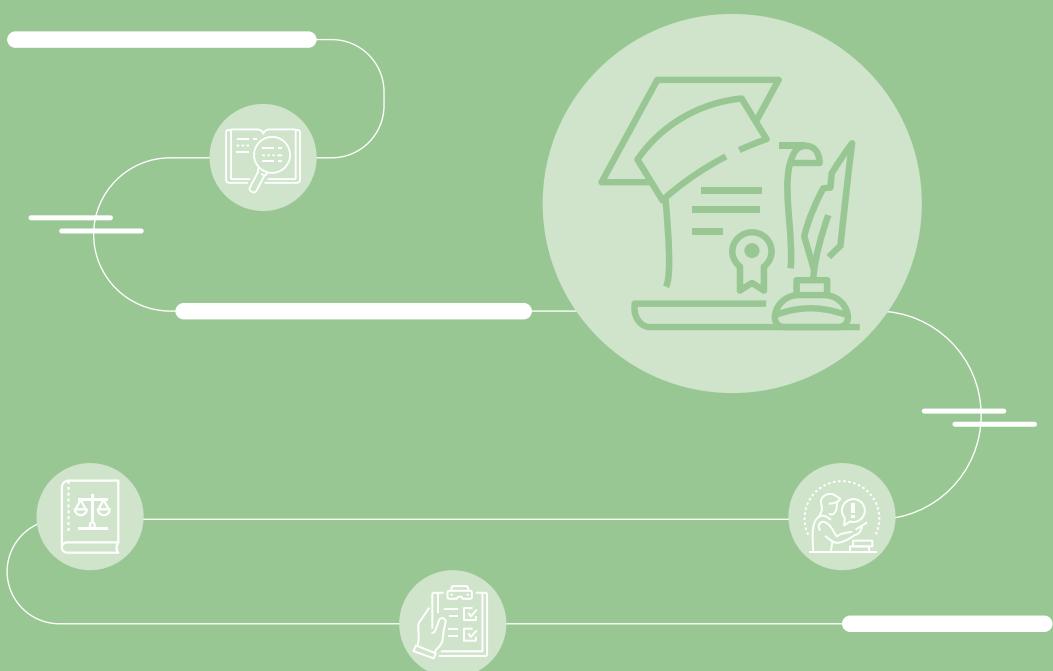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연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함.

「저작권법」 제35조의5: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04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권고사항



# 04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권고사항

## 1 연구계획서 제출단계

연구의 시작은 연구계획 구상 및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시험에 유념해서 연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

-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학문적 체계성에 근거한 가치 및 의미가 있어야 하고,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이 확보되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연구자는 각종 연구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2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해당되는 연구 부정행위

- 연구계획서에도 타 연구물이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 공동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개인 연구로 전환하거나, 타인의 발표문이나 논문 도용 등의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심사에서 선정된 연구계획서를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기채택된 연구의 후속 연구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은 계획서의 재사용 관련 사항을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 심사 받은 내용에서 수정 요구가 있었던 경우 수정해서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인간대상 연구 및 실험동물보호(IRB / IACUC)

- 인간대상 연구를 기획할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포함) 대상여부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시험대상자(미성년이나 노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며, 시험대상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부 연구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가 면제될 수도 있지만, 면제 여부에 관해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자의 연구가 IRB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IRB 승인절차를 받거나,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4 이해상충

- 연구자는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해서 재정적이나 인적이나 직무상이나 지적으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공동연구를 공동연구 참여자 각각이 일정한 근거 표기 없이 단독연구로 전환하여 복수의 연구사업에 공모하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합니다.
- 연구자 스스로가 신뢰하는 이론만을 지나치게 고수하거나, 연구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 연구자가 연구 이외에 상당한 시간을 외부활동에 사용하거나, 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원을 개인적인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학술진흥법」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 연구기관 · 학술단체(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5 연구자 역할 분담

-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에서의 각 연구자의 역할과 저자 자격 부여 여부, 저자 순서 등의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표 5> 연구계획서 제출단계 주요 내용 및 점검사항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제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역할 분담</li><li>• 연구재단 공고문 및 신청요강 등 주요 내용 숙지</li><li>• IRB 대상여부, 절차 확인</li></ul>
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논문작성에 준하는 연구윤리 준수</li><li>• 인용 표기 및 아이디어 표절 여부 확인</li><li>• 계획서 중복사용 여부 확인(자기표절)</li></ul>
계획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윤리를 준수한 연구계획서 제출</li><li>• (해당 시) 기피신청 명단 작성</li></ul>
평가 결과 리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심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li></ul>

## 2 연구계획서 평가단계

연구계획서 평가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가자는 다음 사항에 유념해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 ① 이해충돌

- 평가자는 연구계획서 평가에 임하면서 이해충돌 문제를 검토해서 재정적, 인적, 직무상, 지적으로 법률 등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연구계획서를 평가하면서, 평가자 스스로의 학문적 신념 등으로 비이성적이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평가자는 연구계획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평가자 선정 및 결과 공개

- 공정한 평가단의 구성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제평가위원 명단이나 선정된 평가단 명단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평가자 각각의 엄정한 평가를 마친 뒤, 평가결과는 종합평가의견으로 수렴되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3 회피신청

- 평가자는 자신이 평가를 맡은 연구자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될 경우, 14일 이내 서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4 비밀유지

- 평가자는 평가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동료심사에 대한 의무와 자세

- 평가자 역시 학문 공동체 내의 동료 연구자로서 심사의 공정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표 6> 연구계획서 평가 단계 주요 내용 및 점검사항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연구재단 점검 사항	평가실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평가 방법(심사기간 포함), 평가지침 수립</li> <li>• 선정 시 심사자의 전공, 연구경력, 출신 학교 및 지역 반영</li> <li>• 기피신청 시, 자료 검토 후 반영</li> </ul>
	평가 및 심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선정자 명단 공개를 통한 표절, 중복성 검토</li> <li>• 심사결과, 내용 개별 통보를 통한 보완 기회 제공</li> </ul>
평가자 점검 사항	이해충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측면의 이해충돌여부 확인</li> <li>• 확인 후,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기피신청</li> </ul>
	비밀누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자 선정 후 기밀 유지</li> <li>• 평가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비밀누설 금지</li> </ul>
	동료심사자에 대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심사로 동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함.</li> </ul>

### 3 연구결과물 제출 단계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념해서 연구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1 출판윤리

-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위조·변조·표절을 금지합니다.
- 연구결과물의 이중투고, 중복게재, 표절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한 저자 자격과 저자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
2. “변조”는 연구시설 · 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 · 추가 · 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2 부당저자표시

- 연구결과물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③ 부당한 중복게재

-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④ 연구행위 조사 방해

- 연구자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⑤ 저작물의 인용

- 연구결과물은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합니다.
- 연구결과물이 다른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6 부실학술활동

- 연구자는 약탈적 학술지와 부실학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외학술지 투고할 때에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등의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구자는 해외 학회에 참가할 때에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등의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7 연구 관련 자료 공개 및 보존

- 연구자는 연구 데이터, 연구 결과, 방법 그리고 자료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합니다.
- 연구자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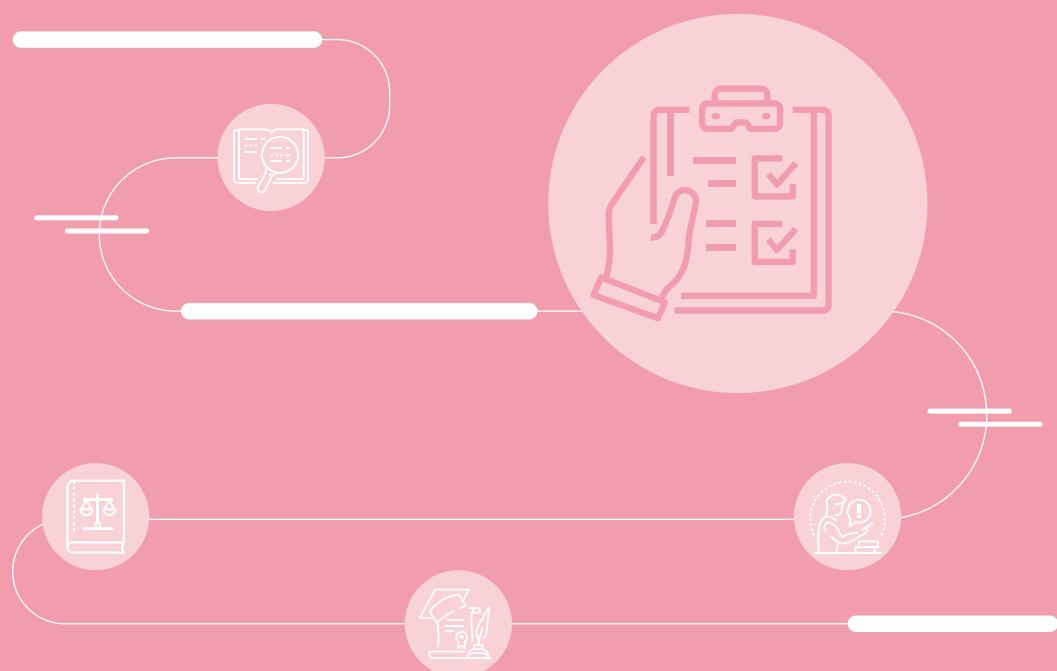
「학술진흥법」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관리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술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 7> 연구결과물 제출 단계 주요 내용 및 점검사항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결과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조·변조·표절 여부 확인</li><li>• 부당저자표시 여부 확인</li></ul>
결과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실학술대회 발표 여부 확인</li><li>• 부실학술지 발표 여부 확인</li><li>• 결과물 미제출 여부 확인</li><li>• 출판윤리 준수 여부 확인</li><li>• 중복게재 여부 확인</li></ul>
발표 이후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보, 데이터 후속 관리</li><li>• 연구비 정산(공정한 절차)</li></ul>

# 부록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체크리스트



## 부록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체크리스트

### 1 계획서 제출단계의 연구윤리 - “정직”

- 좋은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 작성 등 전 과정이 정직성 혹은 진실성을 기초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윤리 주요법령 숙지 및 체크리스트와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연구의 기획, 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연구윤리’가 적용됨을 알고 있다.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연구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것이다.	
과거 채택되지 않은 연구계획서 재사용이나 이 연구계획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타 사업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 중복 채택, 연구비 중복 수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과거에 미선정된 연구계획서의 동일기관 연구사업에 재응모 시 해당 기관의 응모시점에서는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전에 채택된 계획서 내용을 재사용하거나 공동연구로 기획된 내용을 관련자 전원 동의절차 없이 개인 연구계획서 등으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다.	
과거에 공동참여한 연구결과를 출처표시나 합당한 근거 없이 단독 연구계획서로 변환하여 연구사업에 응모하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행위임을 알고 있다.	
IRB 심의(생명대상연구)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절차를 밟으면 과제 채택 시 효율적 연구수행이 가능하며(의무는 아님), 과제 선정에 따른 본 연구 개시 때는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다.	

### <연구윤리 자율서약(연구자)>

본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의 윤리규정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자는 진실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도용 혹은 표절 등의 윤리적인 사안에 관여되지 않고 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 함에 있어서 연구재단의 지원절차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며, 연구계획서 중복채택이나 연구비 중복수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연구자는 기채택된 연구계획이나 결과를 재사용하거나, 공동연구로 기획된 내용(채택 여부와 관계없이)을 공동연구자 전원의 동의 없이 개인 연구계획서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연구자는 IRB 심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 2

## 연구계획서 평가단계의 연구윤리 - “공정”

- 평가 과정은 연구자 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공정함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평가자는 연구윤리 주요법령 숙지 및 체크리스트와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리스트

확인

타인의 연구계획서 평가는 학문 공동체의 동료 평가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평가자는 평가 지침·규정을 숙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에 임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연구계획서 제출자에게 충실향 평가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해충돌’(재정적, 인적, 학문적)에 해당되는 경우 ‘기피 신청’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함을 알고 확인하였다.

평가 및 심사 중 습득한 모든 정보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알고 있다.

### <연구윤리 자율서약(평가자)>

본 평가자는 연구계획서를 평가하면서 다음의 윤리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평가자는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구자를 ‘상호존중’하는 태도로 본 심사에 공정하게 임할 것입니다.

둘째, 평가자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평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계획서의 경우 연구재단에 알린 후 재단의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셋째, 평가자는 평가 중 습득한 모든 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규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키겠습니다.

넷째, 평가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연구계획서 제출자에게 충실향 평가의견을 제공하여 학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 3 결과물 제출단계의 연구윤리 - “책임”

- 모든 연구자는 사회 구성원 및 전문가로서 연구 수행 및 결과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집니다. 연구자는 연구윤리 주요법령 숙지 및 체크리스트와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리스트

#### 확인

연구자의 결과물 제출은 연구내용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지식 확산에 기여하는 일이며, 연구비 지원에 대한 당연한 책무이므로, 성실히 결과물 제출 및 발표에 참여해야 함을 알고 있다.

(예시) 연구비 지원 취지에 맞게 최소 요구량인 연구기간 1년 기준 등재학술지 1편 (100%), 저서 1권(300%) 등의 결과물 산출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며 이를 공표해야 함을 알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의 질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즉 가능한 널리 읽히고 보급될 수 있는 학술지 게재 및 양질의 저서를 출판해야 함을 알고 있다.

연구자의 부실학술단체 활동 및 학술지 참여, 출판의 기획·평가·보급 과정이 없는 자비출판 및 소량 기획출판은 지양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연구, 출판 윤리규정에 주의를 기울여 결과물을 출판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연구윤리 자율서약(연구자)>

본 연구자는 연구결과물(논문 및 저서)을 제출하면서 다음 윤리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를 통한 지식 확산이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하고 연구 결과물을 성실히 발표하겠습니다.

둘째, 연구자는 출판, 연구윤리 관련 내용 즉 부실학술활동참여·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양적인 기준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널리 읽히고 보급될 수 있는 양질의 성과를 출판할 의무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 참고문헌

- 류동춘 · 정원섭 · 이승희 · 김영훈 · 김영심. 2014.『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 룰스, 존. 2016.『공정으로서의 정의』, 김주희 역, 서울: 이학사.
- 브로디, 바루흐. 2003.『토론수업을 위한 응용윤리학』, 황경식 역, 철학과현실사.
- 이인재. 2017,『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 퍼틸, 리차드. 2000,『윤리적 사고방식』, 김기순, 양승력 역,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최경석. 2023.『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연구재단, 2021,『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세종: 에코디자인.
- 한국연구재단, 2016,『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관련 연구윤리실무 매뉴얼』, 서울: 진한엠앤비.
- 황은성 · 조은희 · 김영목 · 박기범 · 손화철 · 윤태웅 · 임정묵. 2014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 <https://www.wcrif.org/statement>
- Steneck, Nicholas H. 2007.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illustrations by David Zinn (<https://ori.hhs.gov/>).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수행자들을 위한

#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길 잡 이

## | 저자

- 이장형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성신형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부교수  
이권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박철하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엄국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 감수

-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  
김창근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교수

## | 기획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 | 발행/인쇄일자

2024년 5월 29일

## | 디자인/인쇄

디자인심원 042) 486-5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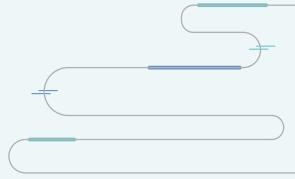
## | 발행 및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042) 869-6648

이 책은 교육부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도출 된 결과물로,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의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원문파일(PDF)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https://cre.nrf.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수행자들을 위한

#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길잡이